

<p>제2023-30호 2023년 4월 1일(토)</p>	<p>시  보</p> <p>여수시</p>	<p><b>시 정 지 표</b></p> <p>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홍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기 타

○ 여수시 조례 제1856호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1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##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 3 및 제9조에  
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민원실”이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2조제1호  
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  
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,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등을 포  
함한다.
2. “전자민원창구”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 
민원을 신청·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·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  
다.
3. “통합전자민원창구”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  
의 구축·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 
구축·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4. “현장민원실”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  
치·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 
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민원실의 설치 등)**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2조에 따  
라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,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등에 민원실  
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.

**제5조(휴무 및 운영시간)** ① 민원실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.

② 민원실은 제1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·폭우·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)**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,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1. 현수막·배너·전광판·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

2.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

3.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

4.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

5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

6.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

7.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

8.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

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 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민원실의 연장 운영)**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,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현장민원실의 설치·운영)**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 민원만을 접수·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, 운영시간,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